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상명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5조(운영세칙)에 의거 서울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금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내장학금

제 2 조 (장학금의 종류) 본교 학부 과정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명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3. 면학장학금
4. 디딤돌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리더십장학금
7. 체육특기장학금
8. 국가보훈장학금
9. 형제・자매장학금
10. 복지장학금
11. 국가고시장학금 <2017.11.07. 폐지>
12. 공로장학금
13. 특별장학금
14. 외국인장학금
15. 나눔장학금
16. 사회봉사장학금
17. 동문자녀장학금
18. 해외봉사장학금
19. 글로벌장학금
20. 경연・공모대회장학금
21. 기금장학금
22. 산업체장학금
23.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장학금

24. 다문화장학금
25. 다자녀장학금
26. 향상장학금
27. 융복합우수장학금
28. 창업장학금
29. 현장실습우수장학금
30. 교육혁신장학금
31. SW면학장학금
32. 진학장학금
33. 기타장학금

제 3 조 (상명장학금)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시행한다.

제 4 조 (성적우수장학금) ①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과수석·차석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학년별 수석, 차석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이상이고 학과/학년별 인원이 입학정원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입학정원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계약학과는 학과/학년별 인원이 장학금 지급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2. 다전공우수장학금: 다전공 이수자 중 이수학기별 상위 10%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외한다.

②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해외교환,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9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성적우수장학금은 동일학기에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수혜대상자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한다.

제 5 조 (면학장학금) ① 면학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면학A: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2. 면학B: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
3. 면학C: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 자

제 6 조 (디딤돌장학금) ① 품행이 방정하며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에서 소속 학과장 또는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7 조 (근로장학금) ① 교내 행정부서 및 기관, 학과사무실 등에서 근로를 하는 자에게 지급

한다.

② 근로 장학금은 학기 및 방학에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다.

③ 근로 장학금은 근로종료 후 지급하며 근로기간 중도탈락시 지급할 수 없다.

④ 근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리더십장학금) ①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지급한다.

② 학생자치기구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체육특기장학금) 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본교 체육부 운영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10 조 (보훈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청, 통일부 등 국가기관에서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로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새터민 또는 새터민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국가유공자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교비로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반액(50%는 국고로 보조함)을 감면한다.

제 11 조 (형제 · 자매장학금) ① 재적 중인 형제 · 자매학생 중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한다.

② 형제 · 자매가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동시 재학 중에 학부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 (복지장학금) ①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임)직원(법인, 각급 부속학교 포함)의 직계가족에게 지급하되, 재직 중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명예)퇴직한 자의 경우 당시 재적중인 직계가족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한다.

제 13 조 (국가고시장학금) 폐지 <2017.11.07.>

① 국가고시장학금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기존 장학금(사법시험,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및 입법고시에 1차 합격자에게는 1개 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제 14 조 (공로장학금) ① 국가,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

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특별장학금) ① 사고, 재난 등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

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외국인장학금) ① 외국인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본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1.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2. 교환학생, 복수학위 과정 유학생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7 조 (나눔장학금) ① 나눔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나눔(기초):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인 자
2. 나눔(장애): 장애(중증,경증)판정을 받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3. 나눔(생활비): 탈북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사회봉사장학금) ①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3회 이상 행사 참가실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조 (동문자녀장학금) ① 서울 및 천안캠퍼스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를 대상으로 1개 학기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단,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자녀는 제외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동문자녀는 8개학기 동안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제 20 조 (해외봉사장학금) ①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자에게 학생경력개발처장의 추천으로 지급한다.

② 해외봉사 활동기간중 중도 탈락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③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글로벌장학금) ① 대학에서 시행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교환학생, 해외복수학위 등)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② 글로벌엘리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 (경연 · 공모대회 장학금) ① 각종 경연 · 공모대회 우수자에게 수상 실적물을 첨부해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지급한다.

②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3 조 (기금장학금) ① 기금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록장학금
2. 혜원장학금
3. 정채우장학금

② 기금장학금은 해당기금 운영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 24 조 (산업체장학금) ① 계약학과 설치 ·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25 조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장학금) 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 · 시행한다.

제 26 조 (다문화장학금) ①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본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제 27 조 (다자녀장학금) ① 형제·자매중 본교 재학중인 셋째부터 지급한다.

제 28 조 (향상장학금) ① 직전학기 성적보다 평점평균이 1.5이상 상승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로 변경된 자와 학사경고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 29 조 (융복합우수장학금) ① 융복합관련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총액내 지급하며 해당 부서장 또는 단과대학장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다.

제 30 조 (창업장학금) ① 창업 또는 창업관련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다.

제 31 조 (현장실습우수장학금) ① 현장실습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다.

제 32 조 (교육혁신장학금) ① 포상성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추천하고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하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3 조 (SW면학장학금) ① SW중점대학 사업관련 장학금으로 등록금총액내 지급하며 해당학

과장의 추천으로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다.

② SW중점대학 사업기간내에서 선발하고 해당학과에만 지급한다.

제 34 조 (진학장학금) ① 학석사 연계 과정 선발자 중 학과장이 선별하여 추천하며, 등록금 총액내 지급하며 학생경력개발처장이 선발한다.

제 35 조 (기타장학금) ① 교내 각 행정부서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경력개발처장의 승인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6 조 (지급액) ① 장학금 지급액은 매학년도 총장이 정한다.

제 37 조 (기타) ① 장학생 선발시 직전학기 성적이 해외교환,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직직전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

② 캠퍼스 및 학과간 전과의 경우 편입생 기준을 적용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등록 후 휴학을 한 경우에만 이월이되며 미등록 휴학의 경우 복학시 장학금 지급할 수 없다. 단 군휴학의 경우 증빙 후 지급한다.

④ 기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국가고시 장학금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조 1호 입학정원 30%미만의 경우와, 제33조 SW면학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은 붙임과 같다.

[붙임]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

장 학 금 명		2018학년도			비 고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액(원)	
성적우수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수시A)	입시요강 공고	1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입학성적우수(수시B)	〃	1학기	등록금의 50%	입학금 50%
	전체수석	〃	8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단과대학 수석	〃	4학기	〃	〃
	학과수석	〃	1학기	〃	〃
	수능우수A	〃	8학기	〃	〃
	수능우수B	〃	4학기	〃	〃
	수능우수C	〃	2학기	〃	〃
기 타 (신입생)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	8학기	정원내 등록금의 60%	입학금 제외
			8학기	정원외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서해5도전형	〃	8학기	등록금의 30%	입학금 제외
학과수석		장학금지급 규정	1학기	등록금 전액	성적기준
학과차석		〃	1학기	등록금의 70%	〃
다전공우수		〃	1학기	등록금의 50%	〃
면학A		〃	1학기	등록금의 40%	〃
면학B		〃	1학기	등록금의 40%	저소득층(0~8분위)
면학C		〃	1학기	일정금액	
근로		〃	학기, 방학	1,100,000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체육특기		〃	8학기	등록금전액	
국가보훈 / 통일부		〃	8학기	〃	보훈처/ 통일부(50%), 대학(50%)
교육보호대상자		〃	8학기	〃	
형제.자매		〃	해당학기	700,000	
복지		〃	8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다문화		〃	8학기	700,000	입학금 제외
다자녀		〃	8학기	700,000	입학금 제외
리더십		〃	1학기	일정금액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학생자치기구)
디딤돌		〃	1학기	일정금액	디딤돌 I : 소득분위 기준
글로벌(해외봉사)		〃	일시	일정금액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특별(홍보대사)		〃	1학기	1,500,000	
나눔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학기	등록금의 30%	소득분위 기준
	(장애가족)	〃	8학기	700,000	
	(생활비 장학금)	〃	해당학기	1,000,000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저소득층)
사회봉사		〃	1학기	700,000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외국인		〃	8학기	일정금액	입학조건 및 내부규정
향상		〃	해당학기	700,000	성적기준
동문자녀		〃	1학기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붙임]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명		2019학년도			비고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액(원)	
성적우수(신입생)	입학성적우수(수시A)	입시요강 공고	1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입학성적우수(수시B)	〃	1학기	등록금의 50%	입학금 50%
	전체수석	〃	8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단과대학 수석	〃	4학기	〃	〃
	학과수석	〃	1학기	〃	〃
	수능우수A	〃	8학기	〃	〃
	수능우수B	〃	4학기	〃	〃
	수능우수C	〃	2학기	〃	〃
기타(신입생)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	8학기	정원내 등록금의 60%	입학금 제외
			8학기	정원외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서해5도	〃	8학기	등록금의 30%	입학금 제외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	8학기	등록금의 30%	입학금 제외
학과수석		장학금지급 규정	1학기	등록금 전액	성적기준
학과차석		〃	1학기	등록금의 70%	〃
다전공우수		〃	1학기	등록금의 50%	〃
면학A		〃	1학기	등록금의 40%	〃
면학B		〃	1학기	등록금의 40%	저소득층(0~8분위)
면학C		〃	1학기	일정금액	-
근로		〃	학기, 방학	1,100,000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체육특기		〃	8학기	등록금전액	-
국가보훈 / 통일부		〃	8학기	〃	보훈처/ 통일부(50%), 대학(50%)
교육보호대상자		〃	8학기	〃	-
형제·자매		〃	해당학기	800,000	-
복지		〃	8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다문화		〃	8학기	800,000	입학금 제외
다자녀		〃	8학기	800,000	입학금 제외
리더십		〃	1학기	일정금액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학생자치기구)
디딤돌		〃	1학기	일정금액	소득분위 기준
글로벌(해외봉사)		〃	일시	일정금액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특별(홍보대사)		〃	1학기	1,500,000	-
나눔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학기	등록금의 30%	소득분위 기준
	(장애)	〃	8학기	800,000	-
	(생활비 장학금)	〃	해당학기	1,000,000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저소득층)
사회봉사		〃	1학기	800,000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외국인		〃	8학기	일정금액	입학조건 및 내부규정
향상		〃	해당학기	800,000	성적기준
동문자녀		〃	1학기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융복합우수		〃	해당학기	일정금액	-
창업		〃	해당학기	일정금액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현장실습우수		〃	해당학기	일정금액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
교육혁신		〃	해당학기	일정금액	등록금 한도 초과지급